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06그99 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인 김명호

서울 등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5나 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에서 피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가 2006. 4. 6.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06. 5. 1. 위 답변서의 제출이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이를 각하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5. 12.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2006. 5. 18. 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5. 26. 변론기일에서 특별항고인에게, 방어방법 각하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항고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06. 6. 2. 위 법원의 고지를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으로 보고, 이에 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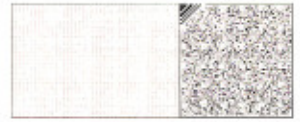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결정이나 명령이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법원이 2006. 5. 26. 변론기일에서 특별항고인의 2006. 5. 1.자 방어방법 각하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항고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한 것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원의 판단 내지 의사표시인 재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합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특별항고를 위 법원의 방어방법 각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것으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재판 또는 그 각하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어느 것이나 소송지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92조 및 제425조의 규정에 따라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뿐이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는 재판 또는 그 각하신청을 기각하는 재판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여전히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10.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



# 정본입니다.

2006. 11. 13.

대법원

법원사무관 김 성 원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이 문서 하단의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